

#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년 3월 21일

제 안 자 : 권광택 의원

## □ 수정이유

- 조례안 제1조의 관련법령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를 추가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 중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 다음에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를 추가

#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
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 및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 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산업기술 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(이하“테크노파크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설립 및 운영) 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3조(사업)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산학연관 등 공동연구 개발 사업</li> <li>2.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사업</li> <li>3.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</li> <li>4.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 사업</li> </ol>	<p><u>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산업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 및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설립 및 운영)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라한다)는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3조(사업)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</li> <li>2. 지역 전략산업 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</li> <li>3.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육성·지원</li> <li>4. 전자정보부품 육성·지원</li> </ol>	<p><u>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산업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 및 「산업발전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제3조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5.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사업</p> <p>6. 시험생산사업</p> <p>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하는 사업</p> <p>8. 그 밖의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제4조 ~ 제10조 (생략)</p>	<p>5. 실버바이오산업 육성 · 지원</p> <p>6. 전통의약산업 육성 · 지원</p> <p>7.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위임 · 위탁 사업</p> <p>8. 그 밖에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제4조 ~ 제10조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~제10조 (개정안과 같음)</p>